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2023. 6. 19.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34호로 2023년 5월 4일 남완현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의 업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정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직무대리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직무대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상 공백을 방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법정대리)에서 전문위원의 사고 시 업무분장에 의한 소관상임위원회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문위원의 사고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검토 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전문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업무 분장에 의한 다른 전문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문위원의 사고로 인한 법정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직무대리규정

-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 ② 부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국장(본부장·단장·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며, 실·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실장·국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실장·국장에 우선하여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 ③ 기관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부기관장 직무대리의 순위를 미리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기관장과 부기관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순위(제3항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직무대리 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말한다)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기관장,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